

제425회 임시회

'25. 4. 22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·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시·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함. (안 제5조)
-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- 지원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, 제9조)
- 의료격차 해소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충청북도 내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, 이로 인한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총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	조항	규정내용(조 제목)
총칙규정	제1조	목적
	제2조	정의
	제3조	도지사의 책무
실체규정	제4조	자료조사 및 관리 등
	제5조	지원대상
	제6조	지원사업
	제7조	신청 및 선정절차
	제8조	감독 및 관리
	제9조	보조금 반환
	제10조	의료기관의 장의 의무
보칙규정	제14조	협력체계 구축
	제15조	포상
부칙규정	부칙	시행일

- 안 제2조는 "보건의료서비스", "의료격차", "의료취약지"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  - "보건의료서비스"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2호를 준용하여 정의함.
  - "의료격차"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, 접근성, 품질 및 건강결과 등에서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등 또는 차이로 정의함.
  - "의료취약지"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응급의료취약지, 분만취약지, 소아청소년과취약지와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.
  
- 안 제4조는 시·군별 의료격차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의료격차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·관리하고, 이를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의료격차 해소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.
  -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,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의 의료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  
-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  -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,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,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.
  
-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, 신청 및 선정절차, 감독 및 관리,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  -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함.
  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감독 및 관리 체계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.
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, 협력체계 구축,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함.
  -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.
  - 의료격차 해소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·장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,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담당부서에서는 의료취약지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, 시장·군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.
- 또한,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.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